#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0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김민석·송재봉·윤준병

정동영 · 서미화 · 안태준

박지원 • 이원택 • 위성락

임호선 · 조계원 · 이연희

김우영 · 김기표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 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호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범죄"란 <u>보호자</u> 에	4 <u>보호자</u>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u>를 포함한 성인</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